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문구 삭제(‘12.2.1) 및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법령이 제정되어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며, 조례 조항 중 상위법보다 기준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나. 상위법 수정(제1조)

다. 자격기준 수정(제7조제4호)

라. 위원회 구성 규정 수정(제14조제4항)

마. 약칭 변경으로 인한 수정(제2조 ~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46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로,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를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상담센터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청소년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 중 “상담센터”를 각각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상담센터는 상담센터장”을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담센터장”을 “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상북도청소년상담센터”를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담복지센터장 및 직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상담센터장”을 “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담센터장은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상담센터장의 직무)”를 “(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담센터장”을 “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상담센터”를 각각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제14조제6항 중 “참석한”을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으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센터장”을 “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담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18조 중 “청소년상담센터운영지침”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 력 산 정 기 준 표(제12조 관련)

직종별	구 분	경 력	환산비율
상담직	“갑” 경력	- 대학전임강사 이상경력 - 박사과정 이수연한(3년 한) - 석사과정 이수연한(2년 한) -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요원 이상 근무경력(석사이상과정 이수후의 조교경력 포함) -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 - 군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100%
	“을” 경력	- 대학 시간강사(주당 8시간 이상) -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의 조교경력	80%
	“병”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 청소년상담실 행정원 근무경력 - 시장이 인정하는 사설 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50%
행정직	“갑” 경력	- 상담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 - 석사과정 이수연한(2년 한) - 전문대학이상 이수연한(전문대학과정 2년 한, 학사과정 4년 한) - 군경력(의무복무기간)	100%

- ※ 1. 초임 상한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2.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
3. 관련학과는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제2조(명칭 및 위치) <u>상담센터</u> 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이하 “상담센터” 이라 한다)이 라 칭하며, 사무실은 구미시 관 내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u>상담복지센 터</u> 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 -----.
제3조(설치기준) <u>청소년상담센터</u> 는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 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전 체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 로 한다.	제3조(설치기준) <u>상담복지센터</u> -- ----- ----- ----- -----.
제4조(운영) <u>상담센터</u> 는 구미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 운영한다. 단, <u>상담센터</u> 의 효 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제4조(운영) <u>상담복지센터</u> ----- ----- ----- ----- ----- -----.

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8. (생략)

제6조(구성) 상담센터는 상담센터장 1명, 선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7조(자격과 임용) 상담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상담센터장은 선발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경상북도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다.

-----.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

-----.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 -----
-----.

제7조(자격과 임용) 상담복지센터

--.

1. (현행과 같음)

2. 상담복지센터장-----

--.

3. -----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4. 상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은 별표 1 과 같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 (생략)

②직원의 정년은 상담센터장 60세,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은 57세로 한다.

제9조(직원의 면직) 상담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 4. (생략)

제10조(상담원 등의 복무) ① (생략)

②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상담센터장은 상담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상담센터장의 직무) ①상담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4. 상담복지센터장 및 직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담복지센터장

-----.

제9조(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상담원 등의 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담복지센터 -----

-----.

③상담복지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

-----.

제11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①상담복지센터장-----

수립,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담당과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제12조(보수 및 수당 등) ①상담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13조(예산) ①시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상담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
· 도비보조 및 시비로 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상담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위원은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

---.

②----- 상담복지센터-----

-----.

제12조(보수 및 수당 등) ①상담복지센터 -----

-----.

②----- 별표-----
-----.

제13조(예산) ①----- 상담복지센터 -----

-----.

②상담복지센터-----
-----.

제14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복지센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⑤ (생략)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상담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협의회 회의는 시장, 상당
센터장 또는 위원 3분의1의 요
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제16조(상담자원봉사자) ①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
자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

-----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해야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 「구
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

제15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상담복지센터 -----

②----- 상답복
지센터장 -----
-----.

제16조(상담자·자원봉사자) ① 상담복
지 센터-----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준용규정) -----

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u>청소년상담센터운영지침</u>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 <u>청소년상담복지센터</u> <u>운영지침</u> ----- -----.
--	---

관계법령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센터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 업무 수행직 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 생활 지도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 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 무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소 관 부 서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미
	팀 장	정 선 심
	담 당 자	김 홍 철 (480-2713)